

세계 환경오염 규제 움직임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

權 彝 赫
(환경처 장관)

이 자료는 지난 5월 29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
전경련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
것이다. <편집자註>

1. 지구환경문제 論議 동향과 무역 규제 움직임

-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淨上됨에 따라 각국은 自國에 유리한 환경질서 구축을 위해 외교역량을 총력 경주하고 있음.
 - 선진국은 환경보호라는 명분하에 비교우위에 있는 환경기술과 독점적 환경산업이익 추구
 - 開發國은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추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혜적인 재정 및 기술의 이전을 주장
- 선진국 주도하의 각종 국제환경협약 채택으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直·間接的인 무역규제조치가 구체화
 - 협약 미가입국 및 환경기준을 준수치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조치 시행 움직임.
- 오는 6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(UNCED)에서 「리오宣言」과 이의 구체화를 위한 「지구환경보전 실천계획(Agenda 21)」이 채택되는 경우 지구환경보존 논의가 일층 가속화될 전망
 - 「리오선언」과 「Agenda 21」은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당장의 직접적인 부담은 없으나 각종 경제정책 추진시 환경적 요소를 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
 - 산림보전, 해양생물자원보호, 자동차배출가스

규제, 독성화학물질 규제등의 분야에서 향후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발전될 전망.

2. 주요 국제환경협약과 그 영향

(1) 몬트리올 議定書

- 목적 :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CFCs 등에 의하여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존층 파괴물질(CFC등)을 규제함
- 추진경과
 - '85. 3.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채택
 - '87. 9.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('89. 1 발효)
 - 우리나라는 '92. 2월 가입신청서 기탁
- 주요내용
 - 규제대상물질 20종을 지정, 생산량 및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규제
 - '95년부터는 '86 사용수준의 50%, '97년에는 15%, 2000년에는 전면 금지
 - 가입국은 非加入國과 CFCs 및 관련제품에 대한 수출·입 금지
 - 자동차 에어컨, 냉장고등 냉동기관, 단열재, 에어로졸 製品등
-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
 - 자동차업계, 냉장고업계등 CFCs 관련산업에 타격 초래
 - 선진국의 대체기술이전 기피로 관련기술의 국내개발 지연시 피해 증가 예상

(2) 기후변화협약

- 목적 :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대기중의 온실가스(CO₂, CH₄)를 안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함.
- 추진경위
 - '88. 1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(IPCC) 설립
 - '91. 2-'92. 4 정부간협상회의(INC) 개최(5회)
 - '92. 6 UNCED에서 채택 예정
- 주요내용
 - 기본원칙
 - 개도국 또는 저개발국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개발원칙 채택
 - 기후변화의 원인과 역효과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조치 원칙
 - 국가별 배출·흡수량의 주기적 공표
 - 온실가스 저감 및 대체기술 이전, 재정 지원
 - 특수지역 및 특수입장 국가에 대한 고려
-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
 - 기후변화방지를 이유로 CO₂ 배출규제시 우리나라의 全産業이 결정적인 타격
 -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의존도가 높고(80%) 에너지 사용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(14%)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

(3) 生物種 다양성 보전협약

- 목적 : 개발에 따른 생태계 및 생물서식지의 파괴에 따른 지구상의 生物種 감소 방지(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유전자 자원의 가치 증대)
- 추진경위
 - '87. 6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실무 그룹 구성 결정
 - '88. 11-'90. 2 특별실무그룹회의 및 정부간 협상회의(6회)
 - '92. 6 UNCED에서 채택 예정
- 주요내용
 - 기본원칙
 - 自國內 生物種 다양성에 대한 국가들의 자주적 권리 인정

- 生物種 다양성에 대한 위해행위 규제
- 生物種 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
- 국제기준의 준수와 국제협력 증진 및 재정적·기술적 지원
- 유전공학 기술이전 및 生物種 보전에 대한 보상
-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
 - 목재, 약재등 원자재 수입에 따른 부담 증대
 - 유전공학기술 및 신물질에 대한 선진국의 독점적 지적소유권의 강화로 선진기술 도입에 애로

(4) 바젤協約

- 목적 :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엄격한 관리로 유해폐기물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방지
- 채택 : '89. 3. 20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, '92. 5. 5 발효
- 주요내용
 - 유해폐기물 교역에 관한 일반적 의무사항 규정
 - 불법교역을 범법행위로 간주
 -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의무화
 - 非協約國과의 수출·입 금지를 의무화
-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
 - 고철, 폐배터리등 재생용 원자재를 수입, 사용하는 업체에 타격 예상

3. 대응방향

<기본방향>

- 지구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나, 지구환경보전협력 논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
 - 대외협상에서 실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함과 함께
 - 국제환경질서 흐름의 대체를 우리 국내환경개선대책과 연계하여 미리미리 국내에 수용하는 정책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

(1) 협상 대응방향

<배출규제 및 자원관리>

- 국내적으로도 폐제한 환경수요가 급증하고 향후 선진국 진입시 규제 同參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

으로 규제에 긍정적 입장

- 다만, 당장의 부담을 초래하거나 부당하게 무역을 규제하는 내용에는 반대하는 입장 견지

〈자금조성 및 지원〉

- 자금이용기회는 점차 줄어든 반면 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이므로 조성기금 확대 주장에 반대입장 견지

〈기술 이전〉

- 기술의 無條件의 이전(개도국 입장)이나 지적소유권의 강한 보호하의 상업적 이전(선진국 입장)에 반대

- “적정보상하에 핵심기술에의 접근기회 증대”를 추구

(2) 대내적 對應방향

- 국제환경규제를 국내 환경개선대책과 연계시켜 국내환경규제기준을 국제기준수준으로 점진적 상향 조정

- 環境工學 관련 핵심 기본기술개발을 21세기 선진 기술 개발사업(G7 프로젝트)의 중점과제로 적극적 개발 추진

- 에너지 節約型 경제구조로의 개편 추진

○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, 소비절약,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등을 지속 추진

○ 장기적으로는 CO₂ 低排出型으로 산업, 건축, 수송체계 개편

- 既 체결협약에 대한 대응

○ 대체물질 개발 및 이용기술 개발, 규제물질의 사업합리화 계획 추진등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에 따른 대응 추진

○ 再生用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바젤협약 가입준비작업의 차질없는 추진

- 국내발생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및 폐기물 재생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-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확대등 국내 생물자원보전 대책 추진

-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교육·홍보 강화

4.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

- 국제환경협약등에 대한 정부대책에는 한계가 있

으므로 산업체의 自求努力이 필요

○ CFC 代替物質 수입에 대비하여 이에 적합한 콤프레셔등 관련부품을 국내개발함으로써 관련산업이 선진국에 예측되지 않도록 해야 함(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대응)

· CFC 취급근로자에 대한 절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용량 억제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힘써야 함.

(美國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30% 절약실적을 거둠)

○ 정밀기기, 유전공학 관련산업등 에너지 의존도는 낮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유망산업에 대한투자증대 필요(기후변화협약에 대한대응)

· 에너지 節約型 산업공정을 채택함으로써 기후협약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방지해야 함.

○ 낙후된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에 대한 집중연구개발은 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음(生物種 다양성 협약에 대한 대응)

○ 폐기물의 발생저감 및 재활용률 제고에 힘써야 함(바젤협약에 대한 대응)

· 자체 실정에 맞는 폐기물 회수·수거체계 확립 필요

- 연구개발(R & D) 투자를 확대, 無公害技術을 개발해야 함.

○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生産工程 및 신기술개발 촉진

○ 重金屬등 유해산업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재활용 기술등

- 또한 低公害 제품 생산을 촉진, E-마크 제품생산에 노력해야 함.

○ 각종 洗劑에서 磷酸鹽 성분을 제거하여 低公害化

○ 工作機器, 가전제품의 低騒音化·전기절약형 제품화등

※ E-마크 제품 생산업체는 기업이미지가 크게 향상

- 완벽한 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정상 가동

○ 산업생산시설이 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불식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의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.

석유사업법시행규칙 개정

- 동력자원부 -

- 동력자원부는 지난 5월 26일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. 이는 석유사업법 개정('91. 1. 14, 법률 제 4321호)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('91. 11. 4, 대통령령 제 13495호)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.
- 금번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취지는 석유산업의 자율화 및 대외개방화 추이에 부응하여 정부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국내 소요석유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함에 있다.
- 금번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정제시설의 개조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를 상업 및 감압증류시설등 9가지로 한정함(제2조의2)
 - 석유산업의 대외개방화에 따라 석유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유 수출입신고 대상 유종을 운할유 및 운할유기유를 제외한 석유로 하고, 자기사용 석유수입자 및 석유가스수입자의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을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으로 하고 석유저장시설의 범위를 정함(제7조, 제7조의2)

- 석유수출입의 승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승인대상범위를 휘발유·등유·아스팔트·운할유·운할유기유를 제외한 석유의 수출입계약과 1년 이상의 장기 석유수송계약으로 한정하고, 원유의 현물도입계약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(제11조)
- 석유판매업중 이동판매소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, 상표표시제의 확립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자는 시·도지사에게 사업의 개시를 보고하고 공급계약 변경시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토록 함(제8조, 제13조)
-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들의 사업장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3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되어 있으나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토록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제13조의2)
- 석유비축의무 부과대상자를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입업자(자기사용수입자, 수입대행자제외), 공업원료용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 자에게 판

매하는 자로 정함(제11조의2)

- 환경개선을 위하여 휘발유·경유·중유등 석유 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(제11조의2)

<석유사업법 시행규칙개정(안) 주요내용>

1. 석유정제시설 신고

- 상업증류시설 이외의 석유정제시설의 증설 및 개조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개조 대상시설을 9種으로 한정함.

2. 석유수출입 신고

- 무역업허가를 받은 자가 석유수출입신고서 신고대상유종의 설정 및 LPG 수입업자 및 자기사용수입업자의 저장시설 보유를 의무화함

-신고대상유종 : 石油(유탄유, 유탄기유, 조유 제외)

-저장시설 보유기준

- 전년도 수입량의 6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사용석유수입자 및 석유가스 수입자는 30일분

-저장시설의 범위

- 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된 저장시설·송유관 부대저장시설·6개월이상 저유용 해상 또는 해안의 저장시설(선박제외)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석유 가스저장탱크 및 시설
-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하석유저장시설

3. 석유판매업 허가 및 보고

- 석유판매업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으로서 유탄유·항공유 및 아스팔트의 판매업·일반판매소 외에 이동판매소가 추가됨에 따라 同 신고절차를 규정함.

- 상표표시제의 확립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자는 시·도지사에게 사업개시 보고 및 공급계약 변경시에 변경계약서를 제출토록 함.

4. 석유수출입 및 수송계약 승인

- 석유수출입 및 수송계약 승인대상 유종의 조정 및 승인수수료의 기준설정

-승인대상유종의 조정

- 수출입계약 : 석유(유가자유화 품목중 휘발유·등유·아스팔트·유탄유·유탄기유·조유는 제외)

- 수송계약 : 단위기간 1년 이상의 장기수송 계약

-일정한 물량 및 가격이하의 현물도입원유에 대한 포괄도입승인 근거 규정

-승인수수료 납부기준

- 수출입계약 : 1만원, 수송계약 : 2만원

5. 石油 민간비축의무부과 대상

-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입업자(자기사용수입자, 석유수입대행자 제외)·공업원료용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업자

※法令上 비축의무량 :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의 30일분 이내에서 고시

6.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제도

-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시에는 석유사업자의 장부 및 물건의 검사개시 3일전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시검사의 근거를 규정

- 석유제품의 품질관리기준 조정

- 자동차용 휘발유에 종점(225°C 이하)을 추가
- 등유 : 색세이볼트 "21"을 "18"로 조정
- 경유 : 수송용과 난방용으로 구분하고 난방용을 착색

-중유 : 유탄함유도에 1, 1.6%를 추가

B-A : 2%→2, 1.6, 1%

B-B : 3%→3, 1.6, 1%

B-C : 4%→4, 1.6, 1%

-유탄유 : 내연기관용 유탄유의 규격을 세분화하고 방청유의 규격을 신설

7.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정

- 과태료 부과기준이 3천만원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. ♣